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한병도 · 전용기 · 양부남

홍기원 · 윤종군 · 이광희

김승원 · 한민수 · 진성준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 ·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 ·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본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5년</u>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 ④ (생 략) <u><신 설></u>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3년</u> -----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 · 운영)</u> ①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 ·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